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시보

제44호(호외) 2022. 11. 18.(금)

공고

- 광양시 공고 제2022-2172호 광양 시청·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의 공고 1
 광양시 공고 제2022-2179호 광양 시청·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2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의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22-486호(2022.11.03.)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1. 사업의 명칭 :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광양시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276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54,760.3㎡
 -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654,760.3	100.00	
주 거 용 지	소 계	230,773.5	35.25	
	단독주택용지	91,003.5	13.90	
	공동주택용지	118,328.9	18.07	
	준주거시설용지	21,441.1	3.27	
상 업 용 지	소 계	43,158.0	6.59	
	일반상업용지	43,158.0	6.59	
도시기반시설 용 지	소 계	380,828.8	58.16	
	교 육 시 설	17,595.0	2.69	
	도 로	176,524.1	26.96	
	공 원	42,615.8	6.51	
	녹 지	85,621.3	13.08	
	공 공 청 사	7,863.5	1.20	
	복합교육연구시설	3,023.1	0.46	
	주 차 장	8,477.2	1.29	
하 천	39,108.8	5.97		

5. 준공일자 : 2022. 11. 18.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용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7. 관계 서류 및 도서는 광양시청 택지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택지개발팀(☎061-797-28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2-2172호(2022.11.18.)로 공사 완료의 공고된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2. 11. 18.

광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광양시장
3. 시행기간 : 2009. 11. 20.(구역지정일) ~ 2022. 11. 18.(환지처분공고일)
4. 환지처분일 : 2022. 11. 18.
5. 사업비 정산내역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계		149,617,142,980원	149,617,142,980원	
일반환지 (청산금)	과도금액 (징수청산금)	11,780,290,600원		
	부족금액 (교부청산금)		7,361,730,150원	
금 전 청 산			32,261,033,250원	
체비지 매각	매각	135,197,674,330원		
	미매각	2,639,178,050원		
사 업 비			109,994,379,580원	

※ 체비지 등 집행 잔액은 「도시개발법」 제7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귀속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가. 체비지 매각대금 및 보조금

구 분	체비지 내역	매각대금	비 고
계	103필지	137,836,852,380원	
단독주택	R2(7), R2(10), R10(1), R12(12), R13(7), R15(2), R15(8), R16(4), R17(2), R18(7), R18(9), R18(10), R19(8), R20(8), R21(1), R21(2), R21(6), R21(11), R22(2), R22(3), R22(5), R23(6), R24(1), R26(4), R29(11), R31(4), R31(5), R31(6), R32(5), R32(10), R33(1), 34(1), R34(2), R34(3), R34(4), R34(7), R35(3), R35(4), R36(2), R36(7), R36(12), R37(5), R37(6), R38(3), R38(4), R38(6), R38(7), R39(6), R39(9), R40(5)	7,249,781,700원	50필지
공동주택	L1(1), L2(1), L3(1), L4(1)	87,493,095,050원	4필지
준 주 거	RC1(3), RC1(4), RC1(7), RC1(8), RC2(4), RC2(8), RC2(9), RC2(10), RC3(5), RC3(6), RC4(1), RC4(2)	6,627,940,000원	12필지
일반상업	C1(3), C1(4), C1(5), C1(6), C1(7), C1(8), C2(3), C2(5), C3(1), C3(3), C3(9), C4(2), C4(3), C4(10), C5(2), C5(3), C5(5), C5(7), C5(10), C6(1), C6(8), C6(9), C6(10), C6(11), C7(3), C8(1), C8(9)	28,602,238,380원	27필지
주 차 장	G1(1), G2(1), G3(1), G4(1), G5(1), G6(1), G7(1), G8(1), G9(1)	5,448,340,350원	9필지
연구시설	E1(1)	2,415,456,900원	1필지

나. 그 밖의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집행내용	지 출	비 고
계		109,994,379,580원	
용역비	조사설계, 제영향평가, 사후환경, 건설사업관리(감리) 등	9,115,834,048원	
공사비	토목, 전기, 석면해체 등	61,571,809,690원	
보상비	지장물, 영농손실 등	22,911,215,811원	
부담금 (수수료 등)	환지처분, 확정측량,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등	14,915,716,918원	
기타	부대비, 예비비 등	1,479,803,113원	

7. 기타사항

- 가.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 나. 환지처분공고로 발생된 과·부족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 다. 환지처분 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라. 관계 서류 및 도서는 광양시청 택지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택지개발팀(☎061-797-31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